



의안번호	제 2024 - 22호
보 고 연 월 일	2024. 11. 1. (제135차 정기회의)

보
고
안
건

전문위원 업무보고

제 출 자	수석전문위원
-------	--------

목 차

- I. 제165차 전체회의 1
 - 1. 일시·장소 1
 - 2. 참석자 1
 - 3. 주요 안건 1

- II. 동물보호법위반범죄 양형기준 설정안(권고 형량범위, 형종 선택의 기준, 양형인자, 집행기준) 검토 2
 - 1. 개관 2
 - 2. 형량범위 4
 - 3. 양형인자 12
 - 4. 집행유예 기준 26

- III. ‘보험 등 전문직 종사자’ 가중인자 관련 사기범죄 양형기준 수정안 추가 검토 27
 - 1. 개관 27
 - 2. 검토 27

- IV. 향후 일정 34

【별첨】

이혜란, “동물보호법위반범죄 권고 형량범위 및 양형인자(집행유예기준) 검토”
장유강, 이성화, “동물보호법위반범죄 양형기준 설정안 - 권고 형량범위, 양형인자, 집행유예 기준 -”
이혜랑, “특별가중인자로서 ‘보험 등 전문직 종사자’”
장유강, 이성화 “특별가중인자로서 ‘보험 등 전문직 종사자’”

I. 제165차 전체회의

1. 일시·장소

- 일시: 2024. 10. 21.(월) 15:00 ~ 18:17
- 장소: 화상회의

2. 참석자(수석전문위원 1명, 전문위원 12명, 간사 1명)

- 수석전문위원, 김현아, 박복순, 윤지영, 이성화, 이준우, 이혜란, 이혜랑, 장유강, 최익구, 최준혁, 최호진, 한상규 전문위원(이상 가나다 순)
- 운영지원단장(간사)

3. 주요 안건

- 동물보호법위반범죄 양형기준 설정안(권고 형량범위, 형종 선택의 기준, 양형인자, 집유기준) 검토
- ‘보험 등 전문직 종사자’ 가중인자 관련 사기범죄 양형기준 수정안 추가 검토

II. 동물보호법위반범죄 양형기준 설정안(권고 형량범위, 형종 선택의 기준, 양형인자, 집유기준) 검토

1. 개관: 2024. 6. 18. 제132차 양형위원회 회의결과

(1) 설정 범위

(가) 다음의 범죄를 설정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함

- 동물을 죽이거나 죽음에 이르게 하는 범죄(동물보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제2호)
- 동물에게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범죄[동물보호법 제97조 제2항 제1호(제10조 제2항), 제3호]
- 위 각 행위의 상습범(동물보호법 제97조 제6항)

(나) 설정 범위 정리

적용법조		구성요건	법정형
동물보호법 §97 ① 1호	§ 10 ① 1호	목을 매다는 등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3년 ↓, 3,000만 ↓
	§ 10 ① 2호	노상 등 공개된 장소에서 죽이거나 동종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 10 ① 3호	부득이한 사유가 없음에도 해당 동물을 다른 동물의 먹이로 사용하는 행위	
	§ 10 ① 4호	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동물보호법 §97 ① 2호	§ 10 ③ 2호	소유자등이 없이 배회하거나 내버려진 동물 또는 피학대동물 중 소유자등을 알 수 없는 동물(이하 '유기동물 등' 이라 한다)을 포획하여 죽이는 행위	
	§ 10 ④ 3호	반려동물에 대한 사육관리 또는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동물보호법 §97 ② 1호	§ 10 ② 1호	도구약물 등 물리적·화학적 방법을 사용하여 상해를 입히는 행위(질병 예방, 치료 등 경우 제외)	2년 ↓, 2,000만 ↓
	§ 10	살아있는 상태에서 동물의 몸을 손상하거나 체액을 채취하거나 체액을	

	② 2호	채취하기 위한 장치를 설치하는 행위(질병 예방, 치료 등 경우 제외)	
	§ 10 ② 3호	도박광고오락유흥 등의 목적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만속경기 등 제외)	
	§ 10 ② 4호	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의 몸에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동물보호법 § 97 ② 3호	§ 10 ④ 2호	반려동물에 대한 사육관리 또는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상해를 입히거나 질병을 유발하는 행위	
§ 97 ⑥	§ 97 ① ~ ⑤	위 각 행위의 상습범	위 각 형의 1/2 까지 가중

(2) 신설 양형기준의 명칭: 동물보호법위반범죄

(3) 유형 분류

- 형량범위를 고려하여, 법정형을 기준으로 ① 죽이거나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②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의 2개의 소유형으로 분류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죽이거나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2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2. 형량범위

가. 개관

(1) 동물보호법위반범죄의 특수성

- 2018. 3. 22.부터 2023. 12. 31.까지 선고된 동물보호법위반범죄의 단일 및 동종경합범 선고사례는 126건. 통계의 표본이 많지 않고, 전체 사건 대비 벌금형이 선고된 사례가 차지하는 비중이 약 74.6% ⇒ 벌금형에 대한 권고 형량범위 설정 필요
- 동물보호법위반범죄가 증가하고 있고, 다양한 기관과 국민들의 관심도가 높음
- 따라서 동물보호법위반범죄에 대하여 형량범위를 설정할 때에는, 기본적으로는 양형실무를 반영하되, 위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여 규범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음

(2) 벌금형 양형기준

- 현재의 양형기준은 선거범죄, 교통범죄 및 스토킹범죄에 관하여 벌금형에 대한 권고 형량범위를 마련하고 있는데, 징역형과 벌금형에 대한 권고 형량범위를 하나의 표로 제시하고 있음
- 위 양형기준은 주로 감경, 기본영역에 벌금형 중첩구간을 두는 방식으로 권고영역을 설정하되, 형종 선택의 기준을 제시하지는 아니함

나. 징역형의 권고 형량범위 검토

(1) (1유형) 죽이거나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가) 선고형량의 분포 및 분석

○ 선고형량 분포

단위: 명, %, 월

세부법조		형량(월)								전체	평균 형량
		3	4	6	8	10	12	18	36		
동물보호법 97조1항1호	수	1	2	4	3	1	-	13)	14)	13	9.46
	비율	7.7	15.4	30.8	23.1	7.7	-	7.7	7.7	100.0	

○ 분석

- 법정형: 3년 이하
- 평균형량: 9.46월
- 빈도는 6월(30.8%), 8월(23.1%), 4월(15.4%) 순
- 최하한: 3월, 최상한: 36월

(나) 법정형 동일 범죄군(징역 3년 ↓)의 권고 형량범위

범죄군	대유형	소유형	감경	기본	가중
손괴범죄	일반적 기준	재물손괴 등	- 6월	4월 - 10월	8월 - 1년6월
폭력범죄	협박범죄	일반협박	- 8월	2월 - 1년	4월 - 1년6월
주거침입범죄	일반적 기준	주거침입	- 8월	6월 - 1년	10월 - 2년
		퇴거불응	- 6월	4월 - 10월	8월 - 1년6월
		주거·신체수색	- 6월	4월 - 1년	8월 - 2년
체포·감금·유기·학대 범죄	유기·학대	일반유기·학대 (유기죄)	- 8월	2월 - 1년	6월 - 1년6월
권리행사방해범죄	권리행사방해 등	강제집행면탈	- 8월	6월 - 1년	8월 - 2년

3)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2고단1308(아내와의 불화로 기르던 애완견을 학대하여 죽이고, 스트레스를 풀기 위한 목적으로 일부러 분양받은 애완견 20여 마리를 죽이거나 학대한 사례)

4)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3고단302(변식농장주로부터 교부받은 개 1,243마리 등에게 고의로 사료 또는 물을 주지 아니하여 죽음에 이르게 한 행위)

(2) (2유형) 교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가) 선고형량의 분포 및 분석

○ 선고형량 분포

단위: 명, %, 월

세부법조		형량(월)								전체	평균 형량
		3	4	6	8	10	12	18	36		
동물보호법 97조2항1호	수	1	5	10	-	-	3	-	-	19	6.26
	비율	5.3	26.3	52.6	-	-	15.8	-	-	100.0	

○ 분석

- 법정형: 2년 이하
- 평균형량: 6.26월
- 빈도는 6월(52.6%), 4월(26.3%), 12월(15.8%) 순
- 최하한: 3월, 최상한: 12월

(나) 법정형 동일 범죄군(징역 2년 ↓)의 권고 형량범위

범죄군	대유형	소유형	감경	기본	가중
폭력범죄	폭행	일반폭행	- 8월	2월 - 10월	4월 - 1년6월
업무방해범죄	경매·입찰방해	일반 경매·입찰방해	- 8월	6월 - 1년	10월 - 2년
체포·감금 유기·학대범죄	유기·학대	일반유기·학대	- 8월	2월 - 1년	6월 - 1년6월
공문서범죄	공문서 등 부정행사	공문서 등 부정행사	- 6월	4월 - 10월	6월 - 1년6월
과실치사상·산업 안전보건범죄	과실치사상범죄	과실치사	- 8월	6월 - 1년	8월 - 2년
디지털 성범죄	통신매체이용음란	통신매체이용음란	- 6월	4월 - 10월	8월 - 1년6월

(3) 상정가능한 안 → 견해 대립

○ 1안(6인)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죽이거나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 8월	4월 - 1년	8월 - 2년
2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 6월	2월 - 10월	4월 - 1년6월

○ 2안(7인, 다수의견)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죽이거나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 8월	<u>6월 - 1년6월</u>	<u>1년 - 2년6월</u>
2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 6월	<u>4월 - 1년</u>	<u>8월 - 1년6월</u>

○ 검토

- 1안과 2안은 1유형의 기본·가중영역의 하한과 상한, 2유형의 기본영역의 하한과 상한, 가중영역의 하한에 있어 2~6개월의 차이가 발생
- **[양형실무의 포섭] 1, 2유형 모두 포섭가능**
- 1안의 경우 1유형과 관련하여 평균형량과 최빈값 3개가 모두 포섭되고 선고사례 77%가 기본영역에 속하게 되고, 2유형과 관련하여 평균형량과 최빈값 1, 2 순위가 포섭되고 선고사례 84%가 기본영역에 속하게 됨
- 2안의 경우 1유형과 관련하여 평균형량 및 최빈값 1, 2 순위가 포섭되고 선고사례 69%가 기본영역에 속하게 되고, 2유형과 관련하여 평균형량과 최빈값 3개가 모두 포섭되고 선고사례 95%가 기본영역에 속하게 됨
- **[다른 범죄군과의 비교]**
- 대체로 법정형이 동일하고 범죄유형이나 죄질 등이 유사한 범죄군들과 비교하여 보았을 때, 2안의 경우 특히 제2유형이 사람에게

대한 폭행보다 기본·가중영역의 하한이 높고, 2유형의 경우 감경 영역의 상한, 기본영역의 상하한, 가중영역의 하한이 높음

다. 벌금형의 권고 형량범위 검토

(1) (1유형) 죽이거나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가) 선고형량 분포 및 분석

○ 선고형량 분포

단위: 명, %, 만 원

세부법조		벌금액(만 원)														전체	평균 벌금액
		30	50	60	70	80	90	100	150	200	300	500	550	700	1,500		
동물보호법 97조1항1호	수	-	1	-	-	-	1	10	1	4	6	5	1	1	-	30	254.67
	비율	-	3.3	-	-	-	3.3	33.3	3.3	13.3	20.0	16.7	3.3	3.3	-	100.0	

○ 분석

- 법정형: 3,000만 원 이하
- 평균 벌금액: 254.67만 원
- 빈도는 100만 원(33.3%), 300만 원(20%), 500만 원(16.7%) 순
- 최하한: 50만 원, 최상한 700만 원

(나) 법정형 동일 범죄군(3,000만 원 ↓)의 권고 형량범위 비교

범죄군	대유형	소유형 (벌금 법정형)	감경	기본	가중
선거범죄	매수 및 이해유도	당내경선 관련 매수 (1000↓, 3000↓)	- 8월, 50만 원 - 500만 원	4월 - 1년	8월 - 2년
		일반 매수, 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매수 (500-3000, 1000↓, 3000↓, 5000↓)	- 10월, 100만 원 - 1,500만 원	6월 - 1년4월	10월 - 2년6월
		재산상 이익 목적 매수, 후보자 매수 (300-5000, 500-5000, 500-7000)	6월 - 1년4월, 500만 원 - 2,500만 원	10월 - 2년6월	2년 - 4년
	허위사실공표· 후보자비방	당선목적 허위사실공표 (600↓, 1000↓, 300-2000, 3000↓)	70만 원 - 300만 원	- 10월, 200만 원 - 800만 원	8월 - 2년, 500만 원 - 1,000만 원
		낙선목적 허위사실공표 (500-3000)	- 8월, 300만 원 - 600만 원	6월 - 2년, 500만 원 - 1,000만 원	1년 - 3년

범죄군	대유형	소유형 (벌금 법정형)	감경	기본	가중
교통범죄	위험운전 교통사고	위험운전 치상 (1000-3000)	6월 - 1년6월 700만 원 - 1,500만 원	10월 - 2년6월	2년 - 5년
	어린이 교통사고	어린이 치상 (500-3000)	6월 - 1년6월 300만 원 - 1,500만 원	10월 - 2년6월	2년 - 5년
	교통사고 후 도주	치상 후 도주 (500-3000)	6월 - 1년6월 300만 원 - 1,500만 원	10월 - 2년6월	2년 - 6년
스토킹범죄	스토킹범죄	일반 스톱킹범죄 (3,000 ↓)	- 8월, 100만 원 - 1,000만 원	6월 - 1년, 500만 원 - 2,000만 원	10월 - 2년6월

(2) (2유형) 교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가) 선고형량 분포 및 분석

○ 벌금형 선고내역(57건⁵⁾) 전체

단위: 명, %, 만 원

세부범죄		벌금액(만 원)														전체	평균 벌금액
		30	50	60	70	80	90	100	150	200	300	500	550	700	1,500		
동물보호법 97조2항1호	수	6	6	1	3	1	-	14	3	9	10	2	-	-	1 ⁶⁾	56	178.21
	비율	10.7	10.7	1.8	5.4	1.8	-	25.0	5.4	16.1	17.9	3.6	-	-	1.8	100.0	
동물보호법 97조2항3호	수	-	-	-	-	-	-	-	-	1	-	-	-	-	-	1	200.00
	비율	-	-	-	-	-	-	-	-	100.0	-	-	-	-	-	100.0	
전체	수	6	6	1	3	1	-	14	3	10	10	2	-	-	1	57	178.59
	비율	10.5	10.5	1.8	5.3	1.8	-	24.6	5.3	17.5	17.5	3.5	-	-	1.8	100	

○ 분석

- 법정형: 2,000만 원 이하
- 평균 벌금액: 178.59만 원
- 빈도는 100만 원(24.6%), 200만 원(17.5%), 300만 원(17.5%) 순
- 최하한: 30만 원, 최상한: 1,500만 원
- 100~500만 원 사이에 68.4%, 30~80만 원 사이에 29.9%

5) 양형위원회 운영지원단이 제공한 선고사례 중 동물보호법 제97조 제5항 제1호에 관한 사례를 제외함

6) 울산지방법원 2020노490(동물소유자에 대한 불만을 품고, 그 반려견을 약 3개월 동안 6회에 걸쳐 주먹 또는 발로 차거나 목과 머리를 밟아 신체적 고통을 준 사안)

(나) 법정형 동일 범죄군(2,000만 원 ↓)의 권고 형량범위

범죄군	대유형	소유형 (벌금 법정형)	감경	기본	가중
선거범죄	매수 및 이해유도	후보자 등에 의한 일반 매수 (2000 ↓, 5000 ↓)	4월 - 1년, 150만 원 - 2,000만 원	8월 - 2년	1년 - 3년
	허위사실공표·후 보자비방	당선목적 허위사실공표 (600 ↓, 1000 ↓, 300-2000, 3000 ↓)	70만 원 - 300만 원	- 10월, 200만 원 - 800만 원	8월 - 2년, 500만 원 - 1,000만 원
교통범죄	교통사고	교통사고 치상 (2000 ↓)	- 8월 100만 원 - 700만 원	4월 - 1년 500만 원 - 1,200만 원	8월 - 2년
		교통사고 치사 (2000 ↓)	4월 - 1년 500만 원 - 1,500만 원	8월 - 2년	1년 - 3년
	음주무면허운전	음주운전 (혈중알콜농도 0.2%이상) (1000-2000)	1년 - 2년 700만 원 - 1,200만 원	1년6월 - 3년 1,000만 원 - 1,700만 원	2년6월 - 4년
		음주측정거부 (500-2000)	6월 - 1년2월 300만 원 - 1,000만 원	8월 - 2년 700만 원 - 1,500만 원	1년6월 - 4년
스토킹범죄	잠정조치 등 위반	잠정조치 위반(2,000 ↓)	- 8월, 100만 원 - 700만 원	6월 - 1년, 300만 원 - 1,500만 원	10월 - 2년

(3) 상정가능한 안 ⇨ 일부 견해 대립

(가) 1유형의 가중영역에 벌금형의 권고 형량범위를 설정할지 여부

- 1안(6인): 벌금형의 권고 형량범위를 설정하는 안
 - 동물학대 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 요구는 인정되나, 기본적으로 동물에 대한 범죄이므로 가중영역에도 벌금형 선택이 가능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 2안(7인, 다수의견): 벌금형의 권고 형량범위를 설정하지 않는 안
 - 동물학대 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 요구 및 불합리한 양형 편차를 줄이려는 양형기준의 존재 의의를 고려하면 동물을 잔혹한 방법 등으로 죽이거나 죽음에 이르게 한 범죄의 가중영역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하여는 벌금형 선택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워 자유형의 선택만 권고함이 상당

(나) 2유형의 가중영역에 벌금형의 권고 형량범위를 설정할지 여부

- 1안(10인, 다수의견): 벌금형의 권고 형량범위를 설정하는 안
 -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가하는 행위로 동물을 죽음에까지 이르지 않게 한 경우, 가중영역에 해당하더라도 벌금형을 선택할 필요가 있음
- 2안(3인): 벌금형의 권고 형량범위를 설정하지 않는 안
 - 동물학대 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 요구 및 불합리한 양형 편차를 줄이려는 양형기준의 존재 의의를 고려하여 가중 영역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하여는 벌금형 선택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워 자유형의 선택만 권고함이 상당

(다) 위 각 다수 견해를 기초로 한 벌금형의 권고 형량범위 (견해 일치)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죽이거나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100만 원 - 700만 원	300만 원 - 1,500만 원	
2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500만 원	100만 원 - 1,000만 원	300만 원 - 1,500만 원

라. 소결론(다수 견해에 따름)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죽이거나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 8월, 100만 원 - 700만 원	6월 - 1년6월, 300만 원 - 1,500만 원	1년 - 2년6월
2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 6월, - 500만 원	4월 - 1년, 100만 원 - 1,000만 원	8월 - 1년6월, 300만 원 - 1,500만 원

3. 양형인자

가. 견해 일치

(1) 특별감경인자(행위)

(가)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포함(견해 일치)

- 살인범죄, 체포·감금범죄, 유기·학대범죄, 폭력범죄 등 유사범죄군도 특별감경인자로 반영
- 동물보호법위반범죄 중 ‘도박·광고·오락·유흥 등의 목적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동물보호법 제97조 제2항 제1호) 등은 조직적으로 행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양형인자가 실제 사건에 반영될 여지도 충분함

○ 양형인자의 정의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타인의 강압이나 위협 등에 의하여 강요된 상태에서 범행에 가담한 경우(형법 제12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 범행을 단순 공모하였을 뿐 범행을 주도하지 아니하고, 실행행위를 직접 분담하지도 아니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나)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 포함(견해 일치)

- 체포·감금범죄, 유기·학대범죄 등 유사범죄군도 특별감경인자로 반영⁷⁾
- 범행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이를 유리한 양형사유로 실시하는 판결례(손이 물린 경우, 모친 간병 중 방치, 경제적 어려움)도 다수 있음⁸⁾

○ 양형인자의 정의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

7) 살인범죄의 경우 ‘참작 동기 살인’을 ‘보통 동기 살인’에 앞선 제1유형로 분류하고 있음(2024 양형기준 제364면)

8) 대구지방법원 2022고정252, 같은 법원 2022고정787, 포항지원 2023고단1224, 대전지방법원 2018고정960, 울산지방법원 2021고단3328 등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피해동물을 사육·관리·보호하던 중 정상적인 판단력이 결여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경우
- 피해동물로부터 자신이나 동거인 또는 친족이 육체적·정신적 피해를 당하여 범행에 나아간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다) ‘피해동물이 죽음에 이르게 된 것이 피고인의 직접적인 행위로 인하지 않은 경우(1유형 중 죽음에 이르게 한 경우에 한함)’ 포함(견해 일치)

- 체포·감금범죄, 유기·학대범죄 등 유사범죄군도 특별감정인자로 반영⁹⁾
- 동물보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제10조 제1항 및 동물보호법 제97조 제2항 제1호, 제10조 제1항에 따라 ‘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어 실제 이러한 결과가 발생하는 사건을 상정할 수 있음

○ 양형인자의 정의

[피해동물이 죽음에 이르게 된 것이 피고인의 직접적인 행위로 인하지 않은 경우(1유형 중 죽음에 이르게 한 경우에 한함)]

● 피고인의 행위 이외에 다른 원인이 개입되어 피해동물이 죽음에 이르게 됨으로써, 피고인의 직접적인 행위로 피해동물이 죽음에 이르게 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를 의미한다.

(라) ‘경미한 상해(피해동물에게 고통을 주는 행위의 경우 상해 없음 포함)(2유형)’ 포함(견해 일치)

- 체포·감금범죄, 유기·학대범죄 등 유사범죄군도 ‘체포·감금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나 ‘유기·학대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를 특별감정인자로 반영
- 치료기간을 명시할 것인지에 대하여 논의가 있었으나, 인자 해당 여부에 대한 객관적 기준을 두는 것이 판단에 도움이 되는 점을 고려하여 치료기간을 명시

9) 위 두 범죄군은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를 별도의 유형으로 분류하고 있음

○ 양형인자의 정의

[경미한 상해(피해동물에게 고통을 주는 행위의 경우 상해 없음 포함)(2유형)]

- 치료기간이 약 2주 이하로서 상해부위가 부분적이고, 일상적인 생활에 크게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며, 회복을 위하여 봉합수술 등 특별한 의료적 처치를 필요로 하지 않는 상해를 의미한다.
- 피해동물에게 고통을 주는 행위의 경우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를 포함한다.

(2) 특별가중인자(행위)

(가)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동물을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포함(견해 일치)

- 유기·학대범죄 등 유사범죄군도 특별가중인자로 반영
- 피해동물 개체 수가 많거나 반복된 경우를 불리한 양형인자로 산정한 판결례가 다수 있음

(나)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포함(견해 일치)

- 체포·감금범죄, 유기·학대범죄, 폭력범죄 등 유사범죄군도 특별가중인자로 반영
- 불리한 양형인자로 기재한 판결례가 다수 있음(반려견이 본인이나 주운 폐지를 물어뜯었다는 이유로 폭행, 시공사 대표에게 보복목적으로 위 대표가 기르는 강아지 폭행, 기르던 개 배변 이유로 분노하여 폭행, 남편이 아끼던 반려견에 앙심, 스트레스를 풀기 위하여, 투견 판매 목적)

○ 양형인자의 정의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피해동물 또는 그 소유자·관리자 등에 대한 보복·원한·증오감에서 범행을 저지른 경우
- 다른 범죄를 실행하기 위한 수단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
-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
- 별다른 이유 없는 무차별 범행 또는 범행 자체를 즐겨서 범행에 이른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다) ‘잔혹한 범행수법’ 포함(견해 일치)

- 유사범죄군인 살인범죄와 폭력범죄는 ‘잔혹한 범행수법’을,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는 ‘체포·감금/유기·학대의 정도가 중한 경우’를 각 특별가중인자로 규정
- ‘범행수법이 잔혹한 경우’에 해당하는 내용의 불리한 양형사유를 실시한 판결례가 다수 있음(폭력적, 9층 내지 11층에서 던짐, 목과 머리 밟아 사망, 전살법, 토지로 불을 붙임, 잔인 등)

○ 양형인자의 정의

[잔혹한 범행수법]

- 고통의 강도와 시간적 계속적 등의 측면에서 볼 때 통상의 정도를 넘어서는 극심한 육체적 또는 정신적 고통을 가한 경우를 의미한다.

(라) ‘중한 상해(2유형)’ 포함(견해 일치)

- 폭력범죄,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등 유사범죄군에서 특별가중인자로 반영¹⁰⁾
-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를 불리한 양형사유로 실시한 판결례가 다수 있음(슬관절 이하의 영구적 마비, 전신 3도 화상, 대퇴골 골절 등)

○ 양형인자의 정의

[중한 상해(2유형)]

- 치료기간이 약 4주~5주 이상인 경우를 기준으로 하되, 후유장애 또는 심한 추상장애가 남거나 위험한 부위의 상해에 해당하거나, 추가 상해가 예상되는 경우 등을 의미한다.

(마)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포함(견해 일치)

- 거의 모든 범죄군에 규정

(3) 특별감경인자(행위자/기타)

(가) ‘청각 및 언어 장애인’ 포함(견해 일치)

- 거의 모든 범죄군에 규정

10) 다만, 체포·감금, 유기·학대 범죄는 체포·감금치상, 유기·학대치상을 별도의 유형(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으로 분류하였음

(나)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포함(견해 일치)

- 거의 모든 범죄군에 규정

(다) ‘자수 또는 내부고발’ 포함(견해 일치)

- 체포·감금 및 유기·학대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이 설정될 때 전문위원회 회의에서 ‘자수’만을 양형인자로 삼을 것인지 ‘내부고발’을 포함할 것인지에 관한 논의가 있었고, 다수의견은 ‘자수’와 함께 ‘내부고발’을 포함하는 것이었음
- 이미 범행을 한 사람이 피해 확대를 방지하거나 다른 범죄의 발생 가능성을 차단하는 측면에서 특별양형인자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던 것이 주된 이유가 된 것으로 보임¹¹⁾

(4) 특별가중인자(행위자/기타)

(가) ‘동종 누범’ 포함(견해 일치)

- 거의 모든 범죄군에 규정

(나) ‘상습범인 경우’ 포함(견해 일치)

- 거의 모든 범죄군에 규정

(5) 일반양형인자

(가) 양형인자(견해 일치)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일반 양형 인자	행위	● 소극 가담	● 계획적인 범행
	행위자 /기타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 진지한 반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상당한 피해 회복	●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및 폭력 실행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11) 2013. 11. 18.자 양형위원회 전문위원회의 제76차 전체회의록 제1, 2면 참조

(나) 정의규정

○ '소극 가담' 정의

[소극 가담]

- 피고인이 수동적으로 참여하거나 범행 수행에 소극적인 역할만 담당한 경우를 의미한다.
- 다만, 실질적으로 범행을 주도하여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범행을 실행하게 한 경우는 제외한다.

○ '계획적인 범행' 정의

[계획적인 범행]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범행도구의 사전 준비 및 소지
 - 사전 공모
 - 동물 유인
 - 증거인멸의 준비
 - 도주계획의 사전 수립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진지한 반성' 정의

[진지한 반성]

- 범행을 인정한 구체적 경위, 피해 회복 또는 재범 방지를 위한 자발적 노력 여부 등을 조사, 판단한 결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정의

[형사처벌 전력 없음]

- 피고인이 해당 범행 전까지 단 한 번도 범행을 저지르지 아니한 경우를 의미한다. 다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동물을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는 제외한다.

○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정의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 합의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피해동물의 소유자나 보호자**를 지속적으로 괴롭히거나, 합의거절에 대한 유형·무형의 불이익을 암시하는 등 부당한 압력을 가하거나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피해를 일으킨 경우를 의미한다.

나. 견해 대립

(1) 특별감경인자(행위)

(가) ‘미필적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 포함 여부

○ 1안(10인): 포함하는 안

- 살인범죄¹²⁾, 체포·감금범죄¹³⁾, 유기·학대범죄¹⁴⁾, 폭력범죄¹⁵⁾는 양형기준에서 위 인자를 특별감경인자로 규정하고 있고, 동물보호법위반범죄는 구성요건상 살인범죄, 체포·감금범죄, 유기·학대범죄, 폭력범죄와 유사성을 가진다고 보임
- 미필적 고의를 유리한 양형인자로 실시한 동물보호법위반범죄에 관한 판결례¹⁶⁾가 있음
- 동물보호법위반범죄는 동물의 생명·신체의 안전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이고, 그중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상해를 입히는 행위’는 불성실한 방치 또는 부작위의 형태로도 이루어질 수 있는 범행이므로, ‘미필적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를 비교적 수월하게 상정할 수 있음
- 적극적인 고의를 가지고 살해 혹은 상해의 결과를 일으킨 경우와의 차별성을 둘 필요성이 있음

○ 2안(3인): 포함하지 않는 안

- 성범죄, 강도범죄, 약취·유인범죄, 사기범죄 중 조직적 사기 유형, 절도범죄, 공무집행방해범죄, 공갈범죄에서는 ‘미필적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를 특별감경인자로 고려하지 않고 있음

(2) 특별감경인자(행위자/기타)

(가)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 포함 여부

○ 1안(10인): 포함하는 안

12) 2024 양형기준 책자 제362면

13) 2024 양형기준 책자 제737면

14) 2024 양형기준 책자 제741면

15) 2024 양형기준 책자 제785, 787, 789면

16) 울산지방법원 2020고단4469, 대구지방법원 2021고단1813, 인천지방법원 2023고정330

- 피해자가 직접 의사를 표시할 수 없는 살인범죄의 경우에도 피해자 유족의 의사에 따른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을 행위자 관련 특별감경인자로 규정하고 있음
 - 실제로 소유자의 처벌불원 또는 합의를 유리한 양형인자로 실시한 판결례가 다수 있음
 - 살인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남겨진 유족의 생계가 불안정할 수 있으므로 정당한 피해보상을 보장하고자 하는 이유로도 '처벌불원 등'을 특별양형인자로 반영하는 것인데, 피해동물이 상해를 입는 등으로 치료가 필요한 경우 그 치료에 소요될 비용마련을 위한 정당한 피해보상을 보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양형기준 설정의 필요성이 있음
- 2안(2인): 포함하지 않는 안
- 양형기준이 설정되는 동물보호법위반범죄의 경우 '죽이거나 죽이는 행위'는 법정형이 3년 이하, 3,000만 원 이하로,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등의 행위'는 법정형이 2년 이하 2,000만 원 이하로 정하여졌을 뿐, 소유관계가 형량에 반영되는 구조가 아니므로 소유관계를 전제로 한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을 고려할 필요가 없음
 - 동물의 처벌불원 의사 표시는 불가능하므로, 소유주의 처벌불원 의사 또는 소유주에 대한 실질적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동물에 대한 범죄에서 이를 양형에 반영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 3안(1인): 처벌불원만 포함하지 않는 안
- 소유주에게 실질적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는지를 양형 사유로 반영하면 충분함

(나) '실질적 피해 회복'의 정의규정 중 '피고인이 소유자의 지위에서 반려동물에 대한 범행을 저지른 경우, 적극적인 치료 등을 하여 피해를 회복시키거나 그 정도의 피해

회복이 확실시되는 경우에도 같다.' 부분 포함 여부

○ 1안(7인): 포함하는 안

- 반려동물은 주인과의 밀접한 관계를 형성하고, 전적으로 생존 등을 주인에게 의탁한다는 점에서 자기 소유 동물에 대한 범행의 반가치는 매우 크고, 이를 회복한 경우에 양형에 고려할 필요가 있음

○ 2안(6인): 포함하지 않는 안

- 우리나라의 법 및 대법원 판례의 기본적인 태도는 동물은 재물로 취급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데, 타인 소유 동물에 대한 범행은 타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측면에서 비난가능성이 높아 이를 회복한 경우 감경인자로 고려할 필요가 있으나, 자기 소유 동물에 대한 치료를 하였다는 것을 실질적 피해 회복이라고 보기는 어려움

[처벌불원]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피해동물의 소유자나 보호자가 처벌불원의 법적·사회적 의미를 정확히 인식하면서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한다.
- ① 피고인 측의 사실상의 강요 또는 기망에 의한 처벌불원 등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지 않은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나, ② 피해동물의 소유자나 보호자의 처벌불원의사에 통상적으로 납득할 만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포함하지 않는다.

[실질적 피해 회복]

-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끝에 합의에 준할 정도로 피해를 회복시키거나 그 정도의 피해 회복이 확실시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다만, 공탁의 경우에는 피해동물의 소유자나 보호자의 공탁금 수령의사, 피고인의 공탁금 회수청구권 포기의사 등을 신중하게 조사, 판단한 결과 실질적 피해 회복에 해당하는 경우만을 의미한다.
- 피고인이 소유자의 지위에서 반려동물에 대한 범행을 저지른 경우, 적극적인 치료 등을 하여 피해를 회복시키거나 그 정도의 피해 회복이 확실시되는 경우에도 같다.

다. 소결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 별	행위	○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동물을 대상으로 하거나 장기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양 형 인 자		○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 ○ 미필적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 ○ 피해동물이 죽음에 이르게 된 것이 피고인의 직접적인 행위로 인하지 않은 경우(1유형 중 죽음에 이르게 한 경우에 한함) ○ 경미한 상해(피해동물에게 고통을 주는 행위의 경우 상해 없음 포함)(2유형)	간에 걸쳐 범행한 경우 ○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 잔혹한 범행수법 ○ 중한 상해(2유형)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행위 자 /기타	○ 청각 및 언어 장애인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또는 내부고발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	○ 동종 누범 ○ 상습범인 경우
일 반 양 형 인 자	행위	○ 소극 가담	○ 계획적인 범행
	행위 자 /기타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 진지한 반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상당한 피해 회복	○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및 폭력 실행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만취상태에서 **동물보호법위반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구분에 따른다.

- ① 범행의 고의로 또는 범행 수행을 예견하거나 범행 후 면책사유로 삼기 위하여 자의로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하여 만취상태에 빠진 경우에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만취상태를 일반가중인자로 반영한다.
- ② 범행의 고의가 없었고, 범행 수행을 예견하지 못하였으나, 과거의 경험, 당시의 신체 상태나 정황 등에 비추어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하여 만취상태에 빠지

면 타인에게 해악을 미칠 소질(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만취상태를 감경인자로 반영하지 아니한다.

③ ①, ②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이르지 않은 경우에는 만취상태를 감경인자로 반영하지 아니한다.

[유형의 정의]

가.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타인의 강압이나 위협 등에 의하여 강요된 상태에서 범행에 가담한 경우(형법 제12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 범행을 단순 공모하였을 뿐 범행을 주도하지 아니하고, 실행행위를 직접 분담하지도 아니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나.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피해동물을 사육·관리·보호하던 중 정상적인 판단력이 결여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경우
- 피해동물로부터 자신이나 동거인 또는 친족이 육체적·정신적 피해를 당하여 범행에 나아간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다. 피해동물이 죽음에 이르게 된 것이 피고인의 직접적인 행위로 인하지 않은 경우(1유형 중 죽음에 이르게 한 경우에 한함)

● 피고인의 행위 이외에 다른 원인이 개입되어 피해동물이 사망에 이르게 됨

으로써, 피고인의 직접적인 행위로 피해동물이 죽음에 이르게 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를 의미한다.

라. 경미한 상해(피해동물에게 고통을 주는 행위의 경우 상해 없음 포함)(2유형)

- 치료기간이 약 2주 이하로서 상해부위가 부분적이고, 일상적인 생활에 크게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며, 회복을 위하여 봉합수술 등 특별한 의료적 처치를 필요로 하지 않는 상해를 의미한다.
- 피해동물에게 고통을 주는 행위의 경우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를 포함한다.

마.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피해동물 또는 그 소유자·관리자 등에 대한 보복·원한·증오감에서 범행을 저지른 경우
 - 다른 범죄를 실행하기 위한 수단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
 -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
 - 별다른 이유 없는 무차별 범행 또는 범행 자체를 즐거워서 범행에 이른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바. 잔혹한 범행수법

- 고통의 강도와 시간적 계속적 등의 측면에서 볼 때 통상의 정도를 넘어서는 극심한 육체적 또는 정신적 고통을 가한 경우를 의미한다.

사. 중한 상해(2유형)

- 치료기간이 약 4주 ~ 5주 이상인 경우를 기준으로 하되, 후유장애 또는 심한 추상장애가 남거나 위험한 부위의 상해에 해당하거나, 추가 상해가 예상되는 경우 등을 의미한다.

아. 처벌불원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피해동물의 소유자나 보호자가 처벌불원의 법적·사회적 의미를 정확히 인식하면서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한다.
- ① 피고인 측의 사실상의 강요 또는 기망에 의한 처벌불원 등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지 않은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나, ② 피해동물의 소유자나 보호자의 처벌불원의사에 통상적으로 납득할 만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포함하지 않는다.

자. 실질적 피해 회복

-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끝에 합의에 준할 정도로 피해를 회복시키거나 그 정도의 피해 회복이 확실시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다만, 공탁의 경우에는 피해동물의 소유자나 보호자의 공탁금 수령의사, 피고인의 공탁금 회수청구권 포기의사 등을 신중하게 조사, 판단한 결과 실질적 피해 회복에 해당하는 경우만을 의미한다.
- 피고인이 소유자의 지위에서 반려동물에 대한 범행을 저지른 경우, 적극적인 치료 등을 하여 피해를 회복시키거나 그 정도의 피해 회복이 확실시되는 경우에도 같다.

차. 소극 가담

- 피고인이 수동적으로 참여하거나 범행 수행에 소극적인 역할만 담당한 경우를 의미한다.

- 다만, 실질적으로 범행을 주도하여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범행을 실행하게 한 경우는 제외한다.

카. 계획적인 범행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범행도구의 사전 준비 및 소지
 - 사전 공모
 - 동물 유인
 - 증거인멸의 준비
 - 도주계획의 사전 수립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타. 진지한 반성

- 범행을 인정한 구체적 경위, 피해 회복 또는 재범 방지를 위한 자발적 노력 여부 등을 조사, 판단한 결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파. 형사처벌 전력 없음

- 피고인이 해당 범행 전까지 단 한 번도 범행을 저지르지 아니한 경우를 의미한다. 다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동물을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는 제외한다.

하.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 합의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피해동물의 소유자나 보호자를 지속적으

로 괴롭히거나, 합의거절에 대한 유형·무형의 불이익을 암시하는 등 부당한 압력을 가하거나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피해를 일으킨 경우를 의미한다.

4. 집유기준

구분	부정적	긍정적
주요 참작 사유	●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 잔혹한 범행수법 ● 피해동물이 죽거나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동물을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동종 전과[5년 이내의,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집행유예 포함)]	●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미필적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 ● 경미한 상해(피해동물에게 고통을 주는 행위의 경우 상해 없음 포함)(2유형) ● 피해동물이 죽거나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것이 피고인의 직접적인 행위로 인하지 않은 경우 ● 공범의 범행수행을 저지하거나 곤란하게 한 경우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
일반 참작 사유	● 2회 이상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 약물중독 또는 알코올중독 ● 진지한 반성 없음 ● 계획적인 범행 ● 공범으로서 주도적 역할 ●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 피해 회복 노력 없음 ●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 자수 또는 내부고발 ● 진지한 반성 ●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 공범으로서 소극 가담 ●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 상당한 피해 회복

Ⅲ. ‘보험 등 전문직 종사자’의 특별가중인자 설정 방안

1. 개관

가. 제134차 양형위원회 회의(2024. 9. 30.) 결과 요지

- 가중처벌의 대상 범위에 ‘자동차정비업자’를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하는 데 이의 없음(견해 일치) ⇨ “의료, 보험”만 가중요소로 남음
- 가중처벌의 대상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그 실행을 지휘한 경우’로 한정할지 여부(견해 대립)
 - 1안(3인): 한정하는 견해
 - 2안(7인): 한정하지 않는 견해

나. 제134차 양형위원회 회의 심의 결과

- ① 적용범위를 당해 전문직 종사자에 한정할 것인지 또는 다른 공범에게도 확대할 것인지, ② 행위자인자로 규정할 것인지 또는 행위인자로 규정할 것인지, ③ 보험사기에 한정할 것인지 또는 사기 일반에 적용할 것인지, ④ 구체적인 성안을 어떻게 할 것인지 등에 관하여 전문위원단의 추가 연구를 거쳐 차회 전체회의에서 논의를 속행하기로 함

2. 검토

가. 보험사기에 한정(견해 일치)

(1) 상정 가능한 안

(가) 1안: 보험사기에 한정

- (+) 보험사기에 한정하는 것이 보험 및 의료 업종의 전문직 종사자가 직무수행의 기회를 이용하여 보험사기 범행을 한 경우에 가

중처벌할 필요성이 있다는 손해보험협회의 의견 및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 당시 논의의 취지에 부합함

- (+) 일반 사기죄의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의 정의에 “금융, 증권, 무역, 회계 등”의 예시가 들어간 것은 사기죄의 양형기준 수립 당시 금융피라미드 조직 설립 등을 통한 사기 범죄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이 있었고, 이를 이유로 가중처벌하는 재판례 등이 반영된 것임. 의료 및 보험업자가 일반 사기 범행한 것을 가중처벌하는 것에 대한 재판례 조사 및 공감대 형성이 충분하지 않음
- (+) 그 외 전문직 종사자(법률, 특허 등)가 직무수행의 기회를 이용하여 범행한 경우에는 모두 사기범죄의 범행수법이 불량한 경우로 확장 해석될 수 있어, 특별가중인자의 적용이 지나치게 넓어질 수 있음

(나) 2안: 사기 일반에 적용

- (+) 직업적, 윤리적 의무가 있음에도 그 직위, 전문지식이나 정보를 이용하여 범행하여 비난가능성이 크다는 점에 있어서는 일반 사기죄와 다르지 않음
- (+) “보험, 의료” 분야 종사자가 그 직무수행의 기회를 이용하여 사기범행을 저지른 경우로 범위가 한정되어 있어 사기 일반에 적용되더라도 직무와 완전히 관계없는 일반 사기범행에까지 확대적용되는 것은 아님

(2) 검토: 1안(견해 일치)

- 보험금의 산정 또는 지급에 관여하는 자가 전문지식이나 정보를 이용하여 보험사기를 범행한 경우 또는 의료인이 보험사기에 가담하는 경우 그 적발이 어려워 보험회사의 피해가 커질 수 있고, 보험계약자를 보험사기로 유인할 가능성이 높은 점 등을 전제로 논의가 시작되어 진행된 것임

- 일반사기에 이를 확장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를 위해서는 범행수법이 불량한 것으로 보아 가중처벌할 “전문직 종사자”의 범위 등에 대하여 재판례의 조사 및 관련 기관의 의견수렴 등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에 대한 충분한 조사와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음

나. 당해 전문직 종사자에 한정(견해 일치)

(1) 상정 가능한 안

(가) 1안: 당해 전문직 종사자에 한정

- (+) 전문직 직업인들이 직무수행 과정에서 범행하였음을 이유로 가중처벌 하는 이유는 해당 직업인에 대한 사회적 기대 및 비난 가능성이 높은 점을 반영하는 것인데 공범이라는 이유로 당해 범죄에 관여한 직업적 요소가 없는 모든 피고인들에 대하여 형을 가중하는 것은 책임주의에 부합하지 않음
- (+) 아래 쟁점 3의 가. 1) 첫 번째 논거에서 살피는 바와 같이 양형기준은 일정한 직위나 책임에 있는 자의 범행을 가중처벌할 때 공범자에게도 이를 적용할지 여부를 구별하여 기재하고 있고, 반대해석상 “금융, 증권, 회계 등 전문직 종사자가 직무수행의 기회를 이용하여 범행한 경우”에는 전문직 아닌 일반 공범자에게는 해당 가중인자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자연스러움. 그런데 유독 보험사기 범행에서 의사 및 보험직과 공모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동일하게 가중해야할 근거가 명확하지 않음
- 실무상으로도, 금융 등 전문직 종사자가 직무수행의 기회를 이용하여 사기 범행을 한 경우 해당 피고인에 대해서만 특별양형인자를 적용하고 있음(춘천지방법원 2017고합41, 청주지방법원 2017고단2623 등). 직업적 요소가 없는 공범자에게 해당 특별양형인자를 적용하는 판례는 찾지 못하였음

(나) 2안: 다른 공범에게 확대 적용

- (+) 보험, 의료 등 전문직 종사자의 보험사기 범행을 범행수법이

불량한 경우의 하나의 예시로 규정하는 이상, 공범 중 1인의 범행수법이 불량한 경우라면, 다른 공범자에게도 특별가중인자로서 적용되어야 함

(2) 검토: 1안(견해 일치)

- 양형기준의 적용은 피고인 별로 개별적으로 판단하여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공범자인 경우라도 범행동기, 범행 가담 정도 및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가중 및 감경의 행위인자가 모두 다르게 적용되고 있음. 보험, 의료 등 전문직 종사자의 보험사기 범행을 가중적 요소로서의 행위인자로 규정한다고 하여 모든 공범자에게 적용해야 한다고 논리적으로 귀결되지 않음
- 공범의 행위태양은 가담경위, 가담정도, 가담 부분 등에 걸쳐 매우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음. 그런데 보험사기에서 공범 중에 한명이 보험, 의료의 전문직을 이용했다는 사정만으로 모든 공범에 대하여 양형가중인자로 보는 것은 책임주의에 반하여 부당함

다. 행위인자로 규정(견해 일치)

(1) 상정가능한 안

(가) 1안: 행위인자로 규정

- (+) 행위자인자로 규정해야한다는 주장의 주요 논거는 행위인자로 두는 경우 직업적 요소가 없는 공범에게까지 확대 적용될 우려가 있다는 점이나, 행위인자로 규정한다고 하여 공범에게까지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볼 수 없음
- 가령, 증권·금융범죄 양형기준의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의 정의 규정에서는 다음과 같이 공범자의 경우에도 적용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명확하게 구별하여 규정하고 있음 (2024년 양형기준 699p)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법인의 주요주주 혹은 대표이사 등 임원, 외부컨설팅업자 등으로서 관련 정보의 생성·관리의 책임이 있는 자가 범행하거나 이들과 공모하여 범행한 경우
- 금융, 증권, 회계 등 전문직 종사자가 직무수행의 기회를 이용하여 범행한 경우

- 그 외의 행위인자 중에서도 공범 모두에게 적용되지 않음을 전제로 하고 있는 인자들이 다수 있음. 가령 사기죄에서 특별감정인자로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 가담”, 특별가중인자로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조직적 사기에서 특별감정인자로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 가담”, “단순 가담”, 특별가중인자로 “사기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그 실행을 지휘한 경우” 등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의 정의규정에서도, “범행의 수단과 방법을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한 경우”는 여러 공범자들 중 다르게 적용이 될 수 있음
- 따라서, 쟁점 2에서 1안을 택하더라도 꼭 행위자인자로 규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님
- (+) 양형기준의 적용원칙으로 같은 특별양형인자 상호간에는 행위인자를 행위자인자보다 중하게 고려하고 있는데, 보험·의료 전문직 종사자가 직무수행의 기회를 이용하여 보험사기를 범행한 경우를 가중처벌하여는 양형인자를 행위자인자로 두는 경우에는 오히려 보험사기를 엄하게 처벌하자는 취지에 어긋나게 됨
- (+) 현재 “금융, 증권, 무역, 회계 등 전문직 종사자가 직무수행의 기회를 이용하여 범행한 경우”는 범행수법이 불량하다고 보아 행위인자로서 가중처벌 하고 있는데 “보험·의료 전문직 종사자가 직무수행의 기회를 이용하여 보험사기를 범행한 경우”를 이와 달리 취급할 근거도 부족함

(나) 2안: 행위자인자로 규정

- (+) 행위인자는 피고인 자신에 관계되는 행위자인자와는 달리 범

죄행위 자체에 관련되는 요소와 관계되는 인자를 의미하므로, 행위인자로 설정한다면 범죄행위에 기여한 공범에게도 적용된다고 봄이 논리적으로 타당함. 예컨대, 예컨대, 장부조작, 문서위조 등의 방법을 이용한 경우

- (+) 그런데 '전문직 종사자가 직무수행의 기회를 이용하여 범행한 경우'를 행위인자로 두는 경우 직업적 요소가 없는 공범에게까지 확대 적용될 우려가 있음

(2) 검토: 1안(견해 일치)

- 2안의 가장 중요한 근거는 해당 인자를 행위인자로 두었을 때 전문직의 표지가 없는 단순 가담 공범에게 해당 가중인자를 적용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점에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를 행위인자로 두더라도 단순 가담 공범에게 적용된다고 볼 수 없음. 또한 이와 같은 우려는 정의 규정을 명확히하는 방식으로도 충분히 해결 가능함
- 현재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의 정의 규정에 “금융, 증권, 무역, 회계 등 전문직 종사자가 직무수행의 기회를 이용하여 범행한 경우”를 두고 있고, 이와 같이 가중하는 이유는 전문직업인이 사회적 기대에 반하여 직업적, 윤리적 의무를 다하지 않고 전문지식과 경험을 사적으로 악용하여 개인적인 이익을 취했다는 점에 비난가능성이 크다는 점에 있음. 보험사기에서 의료 및 보험 전문직 종사자가 직무수행의 기회를 이용하여 범행한 경우를 가중 처벌 하는 이유도 동일함

라. 구체적인 성안문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의 예시에 다음과 같은 정의 추가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범행의 수단과 방법을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한 경우
 - 금융, 증권, 무역, 회계 등 전문직 종사자가 직무수행의 기회를 이용하여 범행한 경우
 - 보험사기 범행에서 의료, 보험의 전문직 종사자가 직무수행의 기회를 이용하여 범행한 경우
 - 장부조작, 문서위조 등의 방법을 적극적으로 동원하여 범행한 경우
 - 고도의 지능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범행한 경우
 - 지금까지는 알려지지 아니한 신종의 전문적 수법을 창출하여 범행한 경우
 - 그 밖의 이에 준하는 경우

IV. 향후 일정

- 일시: 2025. 1. 13. (월) 오후
- 장소: 대법원 1601호 회의실
- 안건: 성범죄 양형기준 수정안(권고 형량범위, 양형인자, 집유기준) 심의 및 수정안 확정, 각 양형기준안 의결